

서울고등법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7나201545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별지 1-1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피항소인	별지 1-2 ‘원고(피항소인)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항소인	별지 1-3 ‘원고(항소인)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유경재
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각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안병규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C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김상훈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동렬, 강신철, 박영운, 표정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4가합27505 판결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회사)’란, ‘1심 변경 여부(피고D)’란, ‘1심 변경 여부(피고 C)’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와 해당 피고 사이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회사)’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별지4 손해배상표 중 J.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별지7 ‘지연손해금(피고 회사)’ 기재 돈임을 확정한다.

나. 피고 D는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D)’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원고에게 별지4 손해배상표 중 J.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5 ‘지연손해금(피고 D)’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C회계법인은 피고 D와 공동하여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C)’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에게 별지4 손해배상표 중 I.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6 ‘지연손해금(피고 C)’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라. 제1심판결 중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회사)’란, ‘1심 변경 여부(피고D)’란, ‘1심 변경 여부(피고 C)’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의 해당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4-1 목록의 각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란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란에 ‘기각’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의 해당 피고에 대한 항소 및 각 해당 피고의 해당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회사)’란, ‘1심 변경 여부(피고 D)’란, ‘1심 변경 여부(피고 C)’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와 해당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해당 원고와 해당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나.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회사)’란, ‘1심 변경 여부(피고 D)’란, ‘1심변경 여부(피고 C)’란에 ‘1심유지’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와 해당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 중 원고 F와 피고 C회계법인, 피고 D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BN과 피고 D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각 해당 원고와 해당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 해당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 및 다.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1) 별지2-1 ‘청구금액표’ 중 ‘②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각 회생채권은 위 표 ‘⑦최종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위 표 ‘④소장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6. 10.부터, 위 표 ‘⑧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2. 16.부터 각 2016. 6. 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임을 확정하고,

2) 별지2-2 ‘청구금액표’ 중 ‘②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각 회생채권은 위 표 ‘⑦최종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6. 6. 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임을 확정한다[다만 별지 1-3 ‘원고(항소인) 목록’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피고 C회계법인, 피고 D는 각자,

1) 별지2-1 ‘청구금액표’ 중 ‘②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표 ‘⑦최종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위 표 ‘④소장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6. 10.부터, 위 표 ‘⑧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2.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별지2-2 ‘청구금액표’ 중 ‘②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표 ‘⑦최종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별지1-1, 별지1-3 각 기재 원고들

1) 제1심판결 중 원고 E, F, G, H, I, J, K, L, M, N, P의 피고 C회계법인, 피고 D에대한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회계법인, 피고 D는 공동하여 별지3-1 ‘청구금액’ 목록 중 ‘②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⑦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V, AY, AZ, BE, BF,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BN, CN의 피고 C회계 법인, 피고 D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회계법인, 피고 D는 공동하여 별지3-2 ‘청구금액’ 목록 ‘②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⑤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각주2>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67. 4.경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는 2001. 5.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Q(이하 ‘Q’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와 그 자회사(R, S, T, U, V 등), 피고 D의 사실상 개인소유인 W, X 등 Y그룹 전체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2004. 3. 12.부터 2013. 9. 27.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2) 피고 C회계법인(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각 회계연도마다 피고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들은 2012. 3. 20.부터 2014. 2. 5.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이하 통칭하여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행위와 허위 재무제표 작성

1) 2006. 4.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 회사의 재무담당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회계 등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던 Z은 2008년 회계연도 손익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회사의 회계팀장 AB에게 흑자가 발생하도록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익을 과대계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AB 등 회계담당직원들은 선박제조업의 경우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발생원가/총공사 예정원가<각주3>)을 기준으로 매출액<각주4>을 인식[선박계약금액 × 진행률(발생원가/총공사 예정원가)]하고, 예정원가가 선박계약금액(선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손 실충당금이 발생하여 매출원가가 상승하고 매출이익(매출액 - 매출원가)이 감소하는점을 감안하여, ① 예정원가가 상승하여 선박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선박에서 예정원가를 선박계약금액 이하로 낮추어 공사손실충당금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과 동시에 진행률을 상승시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② 위 ①과 같이 예정원가를 하락시킨 결과 진행률이 100%를 초과한 선박의 발생원가 일부를 진행률이 낮은 다른 선박으로 이전시키거나, 선박 인도 시점에서 발생원가가 선박계약금액을 초과한 선박에서 초과 발생원가를 진행률이 낮은 다른 선박으로 이전시켜 해당 선박의 진행률을 상승시킴으로써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42기(2008 회계연도)부터 제46기(2012 회계연도)까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제42 내지 46기 재무제표 중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된 주요 항목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구분	재무제표상의 금액	실제 금액	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금액
제42기 (2008)	매출액	3,005,655	2,933,110	72,545
	매출원가	2,845,388	3,060,819	(-)215,431
	매출총이익	160,267	(-)127,709	287,976
	영업이익	94,459	(-)193,518	287,976
	당기순이익	35,616	(-)252,361	287,976
제43기 (2009)	매출액	4,191,257	3,980,907	210,350
	매출원가	4,018,983	4,011,293	7,689
	매출총이익	172,274	(-)30,386	202,661
	영업이익	98,755	(-)103,906	202,661
	당기순이익	(-)120,776	(-)327,426	206,650
제44기 (2010)	매출액	3,940,167	3,919,734	20,433
	매출원가	3,674,794	3,584,576	90,218
	매출총이익	265,373	335,158	(-)69,785
	영업이익	185,532	255,317	(-)69,785
	당기순이익	103,050	172,913	(-)69,864
제45기 (2011)	매출액	4,269,210	4,172,905	96,305
	매출원가	4,086,033	4,055,633	30,400
	매출총이익	183,177	117,272	65,905
	영업이익	103,881	37,976	65,905
	당기순이익	17,785	(-)48,120	65,905
제46기 (2012)	매출액	3,399,290	3,337,748	61,542
	매출원가	3,711,035	3,673,221	37,815
	매출총이익	(-)311,745	(-)335,472	23,727
	영업이익	(-)400,198	(-)423,926	23,727
	당기순이익	(-)769,025	(-)792,752	23,727

다. 피고 회사에 대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및 공시

1) 제45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가) 피고 회사는 나. 3)항 기재 표와 같이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하 ‘매출총이익 등’이라 한다)을 허위로 기재한 제45기(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2012. 3. 1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제45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피고 회사의 제45기 재무제표는 재무성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

3. 19. 이를 공시하였다.

2) 제46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가) 피고 회사는 나. 3)항 기재 표와 같이 매출총이익 등을 허위로 작성한 제46기(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2013. 3. 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제46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피고 회사의 제46기 재무제표는 재무성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 3. 20. 이를 공시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영업정지 및 상장폐지

1)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분식회계 사실 등으로 인하여 2014. 2. 6. 주식거래가 정지되었다.

2)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제47기(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당기 및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 가능성이 인지하였으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47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고, ‘2013. 3. 20.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피고 회사의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감사보고서는 2014. 3. 21.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어 공시되었다.

3) 한국거래소는 피고 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를 예고하는 공시를 하였고, 2014. 4. 4.부터 2014. 4. 14.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친 후 2014. 4. 15. 피고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상장폐지를 하였다.

마. 피고 D 등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1) 피고 D와 AC<각주5>, Z은 피고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순차 공모하여 회계담당직원들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하여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등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13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기소되었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14. 10. 30. 공소사실 중 피고 D와 Z의 2008 내지 2012

회계연도 분식회계사실, AC의 2008 내지 2010 회계연도 분식회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검사는 당기순이익 합계 약 2조 3,264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D 등이 제출한 AD회계법인의 회계분식재산정결과<각주6>에 따라 나. 3)항 기재 표와 같이 분식규모를 합계 6,541억 원으로 축소하여 인정하였다].

3)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512호)에서는 피고 D의 분식회계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결산과 관련하여 Z과 회계분식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Z이 단독으로 회계분식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현재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15도17067호)이 계속 중이다.

바.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경과

1)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09호)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회생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관리인 B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7. 3. 종결되었고 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3 내지 27, 30, 31, 33, 42, 54, 59, 61, 62호증, 을가 제2호증, 을다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 성립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1 및 2012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 공시하면서, ① 총공사 예정원가 조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대체를 통한 매출총이익 등 과대계상, ② 유형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③ 종속기업의 투자지분 손실 누락, ④ 종속기업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제출 공시하였고, 피고 C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기재가 되어있는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기재한 허

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 공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기재가 되어있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주가 하락 및 상장폐지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인으로서, 피고 D는 위 각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이사로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위 각 사업보고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감사인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전제되는 쟁점에 관한 판단 - 분식회계의 인정 여부 및 범위

1) 판단의 필요성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위 가.항에 열거된 4가지 방법의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의 기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원고들이 주장하는 4가지 방법에 의한 분식회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차례대로 판단하도록 한다.

2) 총공사 예정원가 조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대체를 통한 매출총이익 등 과대계상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회계팀 직원들은, ① 실 제로는 특정 선박을 건조하는 데 이미 투입되었거나 향후 투입될 비용을 합산한 ‘총공사 예정원가’가 선박계약금액(선가)을 초과하여 공사손실충당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총공사 예정원가’를 선가 이하로 임의로 조정하여 공사손실충당금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각주7>함과 동시에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을 상승시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각주8> ② 진행률이 100%를 초과한 선박의 발생원가를 진행률이 낮은 선박에 이전시켜 진행률을 높임으로써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으며, 그 결과 매출총이익 등이 과대계상<각주9>된 규모는 2011 회계연도에 약 659억 원, 2012 회계연도에 약 237억 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유형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업이익률이 급락하면서 2012년에는 급기야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사용가치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적어도 2009 회계연도 이후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이를 영업외비용 및 자본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회계를 누락하였다.

나) 판단

(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이하 ‘기업회계기준서’라고만 한다) 제1036호에 의하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고(제8문단), 회사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여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하며(제9문단), 회수가능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의 이하인 경우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제59문단).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는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의 인식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기업환경의 변화 혹은 규제 등의 영향으로 해당 유형의 자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해당 유형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현금의 유출이 발생하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 등을 그 사유로 열거하고 있고(제35문단),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당해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9문단).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8, 9호증, 을나 제25, 26, 29 내지 31호증, 을다 제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1)항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2011 또는 2012 회계연도에 회계장부상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9월 이후 세계 조선산업은 AF지수<각주10>가 급락하고 신조 선박 발주량이 급감하였으며 이후 선가가 40%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건조원가가 선가를 초

과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수주를 계속하였던 사정이 확인되기는 한다.

②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08년 이전에 비교적 고가에 수주한 선박들을 2~3년 이후인 2010~2011년경까지 계속 건조하면서 적어도 2011 회계연도까지는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었고(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분식회계의 영향을 제거하더라도 2010 및 2011 회계연도에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피고 회사의 총 수주 물량이 건조 가능한 전체 물량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설비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2011 회계연도까지는 유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2012 회계연도의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자산손상 징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나아가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의 이하로 하락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AM회계법인의 주식손상검사의견서(을나 제29호증) 및 피고 C 소속 공정가치 평가전문가의 감사조서(을나 제31호증)에서는 피고 회사의 기업가치가 순자산 장부금액보다 높다는 평가를 하였다.

④ 동종 조선업체인 AK, AL도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유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4) 종속기업의 투자지분 손실 누락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0)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조선 및 해운산업의 분석기관인 AF에서 새롭게 발주되는 선박가격을 지표로 계량화한 국제선박가격지수이며, 대체로 AF지수에 비례하여 선가가 정해진다.

피고 회사는 AN회사, AO, AP, AQ 등 총 4개의 종속기업(이하 ‘AR’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 7,097억 원의 자산(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데, AR이 201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여 유동성에 위기를 겪다가 2013. 3.경 가동이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2011 회계연도부터 이미 자체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그 자산(지분)가액이 사실상 “0원”이었음에도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7,097억 원의 자산(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나) 판단

피고 회사가 2013 회계연도에 AR 관련 주식 전부를 “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손상차손을 인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할 때 AR이 2012. 12.경 이미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2013. 3.경 실질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1 및 2012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AR이 과다한 부채 및 자금난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여 있었던 정도를 넘어서 피고 회사가 AR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불가능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거나 자산(지분) 손상을 시사하는 명백한 징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을나 제2, 8, 31 내지 40호증, 을다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보유 주식의 회수가능성 여부는 회계적 추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후의 결과만을 근거로 추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② 2008년경 설립된 AR은 2011년경 매출액이 급증하는 등 실적이 개선되어 2011 회계연도에는 소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한 점, ③ 피고 회사는 2011년경 AR에 대형선 건조 등을 위한 추가 설비투자를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만일 피고 회사가 투자 자본의 회수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하였다면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AR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타감사인들도 위 회사의 계속기업 가정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⑤ 2012 회계연도의 경우 피고 회사의 주식지분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여 손상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2012년 8월경 피고 회사의 채권단인 한국산업은행 등이 CO회계법인에 AR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도록 의뢰한 결과 AR의 금융부채 상환가능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및 2012 회계연도 말에 AR 관련 자산(지분)가액이 “0원”에 이르러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자산(지분) 전액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종속기업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AT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2009년경 이후 AT의 부진한 영업실적으로 위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편입시키지 아니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7호증, 을나 제41 내지 45호증, 을다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 회계연도 말에 피고 회사가 일부 대손충당금을 인식한 부분을 넘어 AT에 대한 대여금 채권 전액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AT에 대한 대여금 채권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회사는 2007. 10.경 자회사인 AT를 인수하여 2009년경까지 AU 인수대금 등으로 1조 원 이상의 돈을 대여하였는데, AT는 AU의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2012년까지 대여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② 그러나 AT는 2009년 기준 매출액 6조 원 정도의 영업규모를 유지하여 일시적인 영업손실 발생만으로 대여금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며, 특히 2011년경 매출액이 급증하는 등 실적이 개선되어 2011 회계연도에는 소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 2011 회계연도에 AT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타감사인도 위 회사의 계속기업 가정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011 회계연도에는 AT에 대한 대여금 채권 전액의 손상을 시사하는 명백한 징후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2012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타감사인이 AT의 계속기업 가정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피고 회사 스스로도 AT에 대한 투자주식 1,621억 원 전액 및 대여금 채권 중 1,446억 원에 대하여 각 손상차손을 인식하기도 하였다.<각주11>

그러나 AT는 AS 등 AU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매년 상당한

11)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 투자주식의 회수보다 선순위이므로 위와 같이 대여금 채권 중 일부는 회수가 가능하나 투자주식은 그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고 2012. 10.경에는 이미 AS를 매각하여 대여금 채권을 일부 회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므로 2012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인식한 위 1,446억 원을 넘어 대
여금 채권 전액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AT는 2013년에 AS 매각대
금 등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을 상환하였다.

④ 2013 회계연도의 경우 피고 회사가 AT에 대한 잔존 대여금 8,898억 원 중 5,967억 원에 관하
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2012 회계연도보다 다액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AS 매각 등 2013 회계연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들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결과만을 근거로
2012 회계연도의 대여금 채권 회수가능성 판단 및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이 당연히 잘못되었
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2011 및 2012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와 관련하여 위 2)항과 같이 건조 대상
선박의 총공사 예정원가 조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대체를 통하여 매출총이익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
법으로 분식회계(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 한다)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분식회계는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1)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 등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
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
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건조 대상 선박의 총공사 예정원가 조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대체를 통하여 매출총이익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고, 이와 같은 분
식회계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재무제표가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 공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한편 주식 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 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로서는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신뢰 아래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매출총이익 등과 관련한 분식회계가 있었던 이상 이는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제출인으로서, 피고 D는 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로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내지 제9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2011 및 201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은 분식회계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함께 위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신뢰 아래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감사보고서 또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 C은 감사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D와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무 성립에 대한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분식회계가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감사인이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나) 그런데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1조, 제5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AE단체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 보칙 1.1.1항에 의하면 AE단체는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회계감사기준 및 AE단체가 그 시행을 위하여 마련한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등 참조).

2)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에 따른 구체적 주의의무

가) 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회계감사기준 100. 3.).

나) 그런데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고 발견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외부감사인이 아닌 피감사회사의 내부감시기구와 임원 등 내부경영자에게 있고(회계감사기준 240. 1. 2.),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합리적 확신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감사과정에서 적발될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으며(회계감사기준 100. 4. 2.), 감사의 종결 후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었더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 감사상의 실패로 볼 수는 없다(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40. 3. 1. 4.).

다) 반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고(회계감사기준 200. 2. 3.),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실제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적합하고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회계감사기준 240. 3.,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40. 4. 2.). 또한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회계감사기준 500. 1. 2.). 그리고 ‘전문가적 의구심’이라 함은 감사인이 입수한 증거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자세로서, 비판적 판단을 수행하고, 문서 또는 경영자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이나 의문을 유발시키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전문가적 의구심은 의심스러운 상황을 간과하거나,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릴 때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등의 감사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감사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다(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00. 1.).

라) 결국 감사인으로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는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가 이미 밝혀진 사후의 시점에서 그때까지 드러난 모든 자료를 토대로 부정이나 오류를 밝혀내지 못한 잘못을 추적해가는 사후적인 고찰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계감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재무제표나 그 관련자료 자체에 또는 그 상호간에 가변하여질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러한 경우 감사인이 한정된 시간과 강제적 조사권의 부재라는 제약 아래에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업무수행을 합리적인 통상의 감사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을나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2011 및 2012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중 건조 대상 선박의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집계에 관한 사항(앞서 본 바와 같이 분식회계가 있음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부분이다)의 적정성을 감사함에 있어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이하 ‘회계감사기준 등’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수준의 감사절차는 일응 수행한 것

으로 보인다.

① 피고 C은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한 다음 회사의 사업 및 회계정책 파악, 내부통제절차의 유효성 평가 등 내부통제절차의 평가절차를 선행하였다.

② 피고 C은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 540. 3. 2.가 제시하는 회계추정치 감사방법 중 하나인 ‘경영자의 추정절차에 대한 검토’의 방법으로 감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 원가기획팀 및 회계팀으로부터 총공사 예정원가 산정자료를 입수하고, ㉡ 총공사 예정원가를 이루는 요소별 증감내역 및 증감의 원인을 분석하며, ㉢ 총공사 예정원가와 실적원가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관한 회사의 소명을 검토하고, ㉣ 당기에 인도된 동일한 선종 또는 유사선종의 실적원가와 회사가 산정한 예정원가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며, ㉤ 경영자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세부적 절차를 수행하였다.

③ 피고 C은 호선별 발생원가 집계액의 적정성을 감사하기 위하여 원가 집계에 대한 분석적 검토, 선급금 반제 관련 증빙 확인, 인도호선분석서 대조, 간접비 배부 테스트, 분개장 검토(Journal Entry Test) 등 세부적 절차를 수행하였다(다만 회계감사기준 등에는 공사원가 배분의 적정성 감사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2011 및 2012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중 건조대상 선박의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집계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이나 오류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였으며, 그렇다면 피고 C은 감사인으로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 일반적 수준을 넘는 추가 감사절차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부정이나 오류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의 존재

(가) 예정원가를 조정하거나 호선별 발생원가를 임의 배분함으로써 선박 진행률을 과대산정하고 공사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의 분식회계는 피고 회사와 같은 조선업종의 회사가 분식회계를 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서 일반적으로 분식회계가 발생할 고유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 2008년경 금융위기와 조선, 해운경기의 불황으로 신조 선박 수주가 급락하여 선가가 40%정

도 하락하였고 같은 해 강재단가 급등으로 선박제조 예정원가가 급상승하여 2009년경 이후 수주한 선박의 경우 건조원가가 선가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 C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2011 회계연도 중간감사에서는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 하락을 예견(매출에서 상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후판가격 상승으로 인한 타격을 타 조선사에 비해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됨)하면서 ‘원가절감계획의 검토, 총공사 예정원가의 시장 전망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한편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고 회사는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여전히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및 2.4%의 영업이익률을 거둔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설령 피고 회사 이외의 일부 타조선사들도 여전히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공시가 되었고 피고 회사의 2011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2010 회계연도에 비하여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전부터 소형 선박이나 상선 등을 주로 제조하여 타조선사들보다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았으므로 위와 같은 경제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점, 2008년 이후 대형 또는 특수 선박 제조를 시작하여 새로운 학습비용이 발생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 산정 과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2011 회계연도의 경우 전기 예정원가에 비하여 당기의 기타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의 총액이 4 ~ 8% 가량 감소하였고, 상당수의 호선에서 전기 대비 100억 원 이상의 재료비 예정원가가 감소하였으며 2012 회계연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었다.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예정원가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예정원가가 감소하는 것은 실제 산정된 수치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목표치를 예정원가로 특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또한 피고 회사에서는 실적원가가 예정원가를 초과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었고, 특히 2011 회계연도에는 예정원가 대비 투입원가누계의 비율이 평균 112.4%에 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총공사 예정원가 산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품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었다.<각주12>

(마) 나아가 위와 같이 총공사 예정원가가 선가를 초과하는 선박이 많은 상황에서는 공사손실충당금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11 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258억 원)보다 감소하여 114억 원의 공사손실충당금이 발생한 점 역시 이례적이다.

(바) 마지막으로 피고 회사에서는 건조 중인 선박의 진행률이 100%를 기록하다가 다시 100% 미만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피고 회사가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을 잘못하였다가 이를 바로 잡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회사의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 절차에 관하여서는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2)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 관련 추가 감사절차 미이행

(가) 피고 C이 원가기획팀 및 회계팀으로부터 총공사 예정원가 산정자료를 제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회사제시자료(을나 제14호증)를 보면, 이는 각 선박별로 예정원가의 각 요소에 소요될 경비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나아가 피고 C이 사업계획의 내용이나 예산을 산정한 기준, 예산 산정의 원천자료 등을 추가로 조사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여기에 피고 회사의 원가팀 부장이었던 AJ이 관련 형사사

12) 피고 C이 변론한 바와 같이 투입원가누계가 예정원가를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곧 분식회계를 의심 할 수는 없고, 을나 제55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 C이 투입원가누계가 예정원가를 초과하는 사유를 개략적으로 분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이 투입원가누계가 예정원가를 초과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면 피고 회사가 택한 예정원가 추정 방법의 적정성에 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건에서 ‘2008년부터는 예정원가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에게 사업계획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실제적으로 감사인에게 사업계획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29호증의2)을 더하여 볼 때, 피고 C이 추가 감사를 위하여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예정원가가 계속 감소하는 이례적 모습을 보였는데, 피고 C은 ‘사내의 전사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반영하여 총공사 예정원가를 감소시켰다’(2011 회계연도), ‘공정작업 개선을 통한 원가 10%절감’(2012 회계연도) 등과 같은 피고 회사의 소명을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감사를 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다) 피고 C이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택한 감사 방법(경영자의 추정절차에 대한 검토 및 시사)은 상당 부분 감사주체의 전문성에 의존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가 이러한 절차를 적합하게 수행할 가능성은 높지

앞으로 회계감사기준 620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선박전문가를 활용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감사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 C은 이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선박진행단계의 파악에 도움이 되는 실사, 선표 검사 등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 C 작성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를 한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매년 실적원가가 예정원가를 초과하고 이에 대한 감사대상 회사의 설명이 유사함에도 분석적 검토만 실시하고 총공사예정원가의 과소계상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예정원가 근거자료와 실행예산서(또는 건조예산서) 비교 미실시’, ‘건조중인 선박의 실사 및 계약조건상 입금률 대비 진행률이 과도한지 여부 검토 등 선박 진행률의 적정성 확인 소홀’이라는 취지로 피고 C이 총공사 예정원가와 관련한 감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호선별 발생원가 집계 관련 추가 감사절차 미이행

(가) 피고 C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로 분석적 검토, 담당자에 대한 질문 등 방법으로 감사를 수행하였는데, 공사원가 배분의 적정성 감사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하여 회계감사기준 등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감사 방법의 채택에 관하여서는 감사인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하다.

그러나 진행률 산정을 통한 매출액 인식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선별 공사원가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가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못지않게 중요하며, 특히 조선업종의 특성상 호선별 발생원가를 임의 배분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가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은 점, 피고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으로서의 위와 같은 일반적 수준의 감사절차에 추가하여 전문가의 활용 등 대체적 감사절차에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나) 한편 피고 C은 전표 위조 등을 통한 부적절한 분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개장 검토(Journal Entry Test)를 추가로 실시하였고 이러한 방법 자체는 추가 감사절차로서 일응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분개장 검토를 위하여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작성된 전표가 전부 제출되어 그 중 허위의 전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피고 회사의 전표는 Y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D의 지배를 받고 있는 W이 관리하고 있었고, W은 허위의 전표를 제외한 나머지 전표만을 피

고 회사에 제출하여 피고 C은 부적절한 분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 회사와 W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W은 피고 회사의 회계분식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 C으로서 W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거나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자료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이 W 및 피고 회사를 만연히 신뢰하여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완전성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은 감사상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선박별 발생원가 집계액의 적정성에 대한 적합하고 충분한 입증감사절차 미실시’, ‘부적절한 분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분개장 검토와 관련하여 검토대상 총계정원장에 대한 완전성 검증을 하지 않거나 소홀’이라는 취지로 피고 C이 감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감리의견을 제시하였다.

4. 손해배상의무 성립에 대한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식회계는 피고 회사의 재무담당임원 Z이 독단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피고 D는 분식회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대표이사 등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이 제출 공시된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 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지

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바,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과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 무엇보다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 주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이어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 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다(외부감사법 제2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라) 즉 대표이사는 회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모든 임, 직원의 업무처리 전반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의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의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고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문제점 - Z의 회계업무를 견제, 감독할 실질적 내부통제절차의 미비
먼저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다 제84, 9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는 재무담당 임원인 Z의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며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대표이사의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재무담당임원인 Z은 피고 회사의 자금 집행, 외환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 D에 의하여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되어 피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그런데 이처럼 자금 집행, 외환업무와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회계제도의 관리 운영권한이 Z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상 자금 집행 또는 외환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허위로 하여 자신의 잘못을 은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Z은 실제로 선물환 거래에 관한 외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D로서는 회계처리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Z의 회계업무를 견제, 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반드시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Y그룹 '경영진단팀'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하여 Z의 업무를 적절하게 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Z의 회계업무 수행에 대하여 실효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원천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집행, 외환업무의 내용과 회계처리 결과를 실질적으로 대조하는 등 방법으로 회계처리의 진실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 회사의 거래 규모와 영업 내용,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설치 목적과 활동 범위 및 의사결정방식, 실제로 Z이 작성한 개괄적인 재무자료만이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 회의체가 Z이 수행하는 회계업무의 진실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며, Y그룹 '경영진단팀' 역시 피고 회사를 포함하여 Y그룹 계열사 전부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감독범위가 회계업무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Z의 회계업무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또한 Z의 회계업무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 그 밖의 내부 조직이나 담당자를 찾을 수 없으며(피고 회사 내에 '법무감사팀'이라는 명칭의 조직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변호사 1명과 직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주로 계약 체결, 민원 업무 등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Z과 그 휘하에 있던 회계팀 직원들이 아무런 감시 없이 피고 회사의 회계업무를 전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밖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다 제38 내지 42, 55, 89, 9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는 위 가)항과 같이 Z의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그밖에 대표이사로서 임, 직원의 업무처리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회사의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일반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 D는, Z이 2008년 ‘매도헤지 선물환 거래’<각주13>를 함에 있어 실제로 선박건조 계약이 체결된 금액을 넘어 이른바 ‘수주예정분’이라는 명목으로 순수한 투기거래를 하였다가 이후 환율 상승으로 상당한 평가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이때 Z은 위 평가손실을 2008년 영업외손실로 일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존 수주분에 대한 매출액에 반영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진행률을 조작하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 나아갔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 D로서는 투기 목적의 선물환 거래가 존재하여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특히 Z이 분식한 매출총이익 등이 실제 체감한 수준과 비슷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Z은 선물환 거래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고,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수주예정분’ 및 가계약(LOI)

13) 향후 선박 건조대금을 외화로 지급받을 시점의 환율하락에 따른 손실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미리 약정된 선물환율에 외화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예상과 달리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체결 이후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를 영업외손실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별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와 무관한 기존 수주분의 헤지 비율을 높여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실제와 달리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 D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① Z은 2008. 1. 15. Y그룹 외환 TFT의 결정에 따라 헤지거래의 범위를 기존 ‘외화 총입금예정액 <각주14>의 75%’에서 ‘85%’로 확대하였고, 그 결과 2008. 9. 기준으로 피고회사의 매도헤지 금액 총액이 외화 순입금예정액<각주15>의 111%에 달하였으며, 2009년의 경우 총 매도헤지 금액이 외화 총입금예정액을 초과하기도 하였다.

② 그런데 향후 환율이 하락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환율이 계속 상승하여 2008. 2. 1,374원에 이르렀다가 2012년 말까지 1,100원대가 유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상당한 규모의 평가손

실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Z은 2008. 10. 14. ‘실제 외환 포지션(75%)을 초과하는 헤지 비율(85%)로 정책을 변경하여 발생한 추가 헤지로 인하여 기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의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심사 과정에서 (ㄱ) 헤지 비율을 75%에서 85%로 상향한 경위는 ‘수주예정분’에 대한 헤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는 점, (ㄴ) ‘수주예정분’의 경우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어려워 기존 수주분에 대한 헤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등을 인정하였다(이처럼 회계처리를 한 이상 장래 환율이 상승할 경우 그 손실을 영업외손실로 반영할 수 없고 기존 수주분의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④ 또한 Z은 2008년경 가계약(LOI) 상태에 있던 CP, CQ사의 선박 발주가 취소된

14) 확정된 수주계약에 따라 입금이 예정되어 있는 외화 총액을 의미한다.

15) 총입금예정액에서 재료비 등 외화로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후 위 취소된 계약에 대한 헤지 거래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존 수주분의 헤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그러나 위 (2)항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D가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Z이 전체 선물환거래 중 ‘수주예정분’이 어느 정도인지, ‘수주예정분’으로 인한 평가손실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였는지 피고 D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전체 선물환 거래의 규모 및 이로 인한 손실액은 외부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 등을 통하여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 D도 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위 징계과정에서 ‘수주예정분’에 대한 헤지가 존재하였던 점,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존 수주분의 헤지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실제와 달리 기재되었던 점 등까지 확인된 이상 피고 D로서는 향후 ‘수주예정분’의 규모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영업외손실로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설령 피고 D가 Z이 말한 ‘수주예정분’을 ‘가계약(LOI)분’으로 추측하여 투기적 선물환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징계과정에서의 Z의 답변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만연히 추측

한 것 역시 과실이라고 보인다].

② 또한 피고 D 역시 2008년 헤지 비율이 기존 ‘외화 총입금예정액의 75%’에서 ‘85%’로 상향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외화 순입금 비율의 변동을 시사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이처럼 헤지 비율을 높인 이상 실제 외화 입금액 이상의 헤지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그렇다면 헤지거래 이후 실제 선박건조계약 체결 및 외화 입금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선박건조계약 체결 없이 헤지거래만 있는 부분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제3의 나.3)나)(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11 및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관련하여서는 매출총이익 등이 과대계상 되었음을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는 2008년 선물환 거래로 인하여 향후 선박건조가 완료되어 건조대금을 지급받는 2~3년 이후의 시점에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D의 경력, 지위,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 D로서는 이 사건 2011 및 2012 회계연도의 매출총이익 등의 규모 등 재무제표 기재사항의 진실성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④ 피고 D와 함께 2009. 11.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회계 등 재무업무를 총괄하였던 AC은 ‘2010. 1.경 Z으로부터 가결산 결과 약 800~900억 원의 적자가 난다는 보고를 받고 내부적인 목표이익률 10%에 맞추어 예정원가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Z으로부터 최종적으로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다는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설령 Z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 D에게 분식회계사실을 숨겼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AC이 위와 같은 영업이익 과대계상 사실을 대표이사이자 그룹 총수인 피고 D에게 숨긴 채 자신이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D는 위 2010. 1.경 영업이익 과대계상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AC으로부터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AC과 Z에게 재무 및 회계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면서 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또한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⑤ 한편 피고 D가 체감하는 영업 상태와 피고 회사의 공시된 영업 상태의 수준에 큰 차이가 없어서 Z의 회계분식 행위를 의심할 수 없었다는 피고 D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설령 피고 D가 전문경영인으로서 피고 회사를 장기간 운영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거래 규모나 조선업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 D가 개인적으로 피고 회사의 영업손익 등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위 ① 내지 ④항과 같이 재무제표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이상 피고 D로서는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일반적 수준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 D는 Z에게 회계업무를 계속 전담하도록 하면서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을 통한 일상적 점검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D는 위 가)항 및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로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의 제출 공시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주식거래의 범위 및 손해배상액의 추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중 먼저 공시된 제45기(2011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2012. 3. 19. 최종 공시(감사보고서가 공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 피고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사람은 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기재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각주16> 한편 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이 공표된 시점은 피고 회사 주식 등의 거래정지일인 2014. 2. 6.로서 위 거래정지이후 피고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사람은 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공시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들은 위 최초 공시일 다음 날인 2012. 3. 20.부터 거래정지일 전날인 2014. 2. 5.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 등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한편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음을 이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인, 제출대상법인의 대표이사, 감사인이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배상할 금액은, ① 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추정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추정하고, ② 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그 처분가격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같은 법 제170조 제2항).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2012. 3. 20.부터 2014. 2. 5.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위 2)의 ①항 또는 ②항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과관계 제한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6) 피고 회사와 피고 D는 사업보고서가 먼저 공시된 2012. 3. 12. 이후부터 2012. 3. 18.까지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원고들이 위 기간에 대하여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이 공표된 2014. 2. 6. 이전에 원고들이 이미 매도한 주식(이하 ‘공표 전 매각분’이라고 한다)은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공표됨으로써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에 형성된 주가를 기초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2014. 2. 6. 거래정지가 된 이후에 보유한 주식의 경우에도 취득가격과 거래정지 당시의 주가(또는 주식 취득시점부터 거래정지시점 사이의 기간 중 최저 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주가 하락분(이하 ‘공표 전 하락분’이라고 한다)은 조선시장의 전세계적 불황, Y그룹의 위기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공표 전 하락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가 하락분에 대하여서만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한다.

2) 관련 법리

가)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 4항의 규정, 제170조 제2, 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조항을 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가격 하락의 원인이 당해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정식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말미암아 부양된 상태의 주가에 모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표일 이전에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있었다는 정보가 미리 시장에 알려진 경우에는 주가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미리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다른 요인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증명하거나 또는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에 있어서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정상적인 주가까지 증명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특히 문제가 된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분식회계에 관한 경우에는 그 성질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예컨대외부감사인의 한정 의견처럼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 회사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의 누출이 사전에 조금씩 일어나기 쉽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 자체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표 전 매각분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년 이후 금융위기와 함께 AF지수가 계속 하락하여 조선업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신규 선박 수주가 급감하였고 선박 건조의 주재료인 강재가격까지 급등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감소한 점, Y그룹과 피고 회사가 2007년 이후 AU 등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 지연, 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사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던 점,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1년 이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AH 등 타 조선사의 주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상당한 폭으로 하락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이러한 사정만으로 2014. 2. 6. 이전에 이 사건 분식회계가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다른 사정들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 또는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에 있어서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정상적인 주가까지 증명되는 등 이 사건 분식회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까지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표 전 하락분 부분에 관한 판단

공표 전 하락분을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 전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가 하락의 요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 전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직접 주가가 하락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까지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V, BF, G, J, M, N, P

원고 AV, BF, G, J, M, N, P(이하 ‘원고 AV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들

원고 AV 등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은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될 당시 이미 그 행사만료일이 지났거나 그 행사가격이 주가를 초래하여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 AV 등이 신주인수권증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증권 역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자가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를 믿고 이를 취득한 이후 그 신주인수권증권 자체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취득자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격과 변론종결 당시의 시장가격(또는 처분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호증의 1, 9, 58, 154, 238, 251, 25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V 등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제12, 22, 2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분리형 신주인수권(이하 차례대로 ‘1WR’, ‘2WR’, ‘3WR’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될 당시 1WR은 이미 그 행사만료일(2012. 7. 20.)이 도과하였고 2WR, 3WR은 행사만료일이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그 행사가격(2WR: 14,150원, 3WR: 7,790원)이 주가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그러므로 먼저 1WR에 관하여 보면, 1WR의 행사만료일(2012. 7. 20.) 무렵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증권 자체의 가격이 취득 당시의 가격보다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때까지 원고 AV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 AV 등이 위 행사만료일을 지날 때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비로소 1WR의 가치가 소멸하였다고 보이므로 1WR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반면 2WR, 3WR의 경우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될 당시 위와 같이 그 행사가격이 주가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사업전망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주가가 행사가격을 상회할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된 2014. 2. 6. 무렵

2WR, 3WR의 가치는 0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V 등은 2WR, 3WR의 취득가격과 최종 보유가격(0원)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마) 한편 2WR, 3WR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 AV 등에게 발생한 손해가 이 사건 분식회계와 무관한 사정, 즉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다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어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식회계와 주가 하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이상 주가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이하로 하락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감소한 것 역시 이 사건 분식회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손해액의 산정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기간인 2012. 3. 20.부터 2014. 2. 5.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취득한 피고 회사의 주식 등의 수는 별지4 손해배상표 'A. 2012. 3. 20.~2014. 2. 5. 취 득주식등 수'란 기재와 같고<각주 17>, 그 매입가액은 같은 표 'B. 매입가액<각주18>'란 기재와 같으며, 위 취득 주식 등 중 이미 처분한 주식 등의 가액 및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가액은 같은 표 'C'. 정상가격(매도주식)'란 기재 금액 및 'C'. 정상가격(보유주식)<각주19>'란 기

17) 한편 갑 제1호증의1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F은 2014. 2. 5. 이전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원고 F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8) 신주인수권의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2WR, 3WR의 매입가액이다.

19) ① 보유주식 수: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에서 처분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② 정상주가: 주식거래정지 이후 거래가 재개된 7일간(2014. 4. 4.부터 2014. 4. 10.까지) 평균 주가 181.1원 × 3 [피고 회사가 2013. 11. 21. 무상감자(3:1)를 실시하였으므로 무상감자 실재 각 금액과 같다(단 원고들이 보유 또는 처분한 주식 등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보유주식 등 중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선입선출법에 따른다)].

2) 그렇다면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같은 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별지4 손해배상표 'B. 매입가액'란 기재 금액에서 같은 표 'C'. 정상 가격(매도주식)'란 기재 금액 및 'C'. 정상가격(보유주식)'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같은 표 'D. 자본시장법상 손해추정

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다만 손해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D. 자본시장법상 손해추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표 'E. 원고 주장 손해액' 기재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인 'G. 항소심 인정손해액'란 기재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사건분석방법(Event Study)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피고 회사의 거래정지일 전날인 2014. 2. 5. 주가 1,850원과 위 주식의 거래정지 이후 정상주가인 181.1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주가 하락분 중 피고 C의 감사소홀 등 임무해태와 관련한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분은 '384.5원'에 불과<각주20>하므로, 위 손해액 추정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손해배상추정 규정을 뒤집고 그 손해액의 일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배제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행 전의 주가를 기준으로 재산정]

③ 정상가격(보유주식): ① × ②

20) 피고 C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2014. 2. 5. 주가 1,850원에서 1493.9원까지의 하락분 356.1원은 일반적인 시장변동에 따른 하락분이며, 166.5원은 피고 D의 횡령 배임 등 형사문제에 관한 풍문 및 보도에 의한 하락분이고, 나머지 1,146.3원만 자본잠식으로 인한 주가하락분이며, 그 중 매출과다계상 회계분식으로 인한 주가하락분은 384.5원이라는 취지이다.

마. 책임의 제한

1)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하여 증권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추정하고 손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전환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당해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책임제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피고 회사가 거래정지를 거쳐 상장폐지에 이른 것은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된 사정뿐 아니라 시장의 경제상황 변화, Y그룹의 경영 위기, 조선·해운 산업의 세계적인 침체에 따른 피고 회사의 경영 부진, 피고 회사 임원들의 위법행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분식회계 공표 이외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이 사건 분식회계 공표로 인한 손해액과 구분하여 밝히는 것은 극히 곤란하므로, 이를 피고들의 책임제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주식 투자는 항상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당시의 경제동향,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수집 경로를 통하여 대상 기업의 경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들이 오로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하여 피고 회사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나아가 피고 C의 책임제한 비율을 나머지 피고들과 달리 정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가) 피고 C은 외부감사인으로서 장기간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식회계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나, 이 사건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면서 묵인 또는 방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피고 C의 책임은 직접적으로 분식회계를 실행한 피고 회사의 책임이나 대표이사로서 피고 D가 부담하는 책임과는 그 발생 근거 및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3다85172 판결 등 참조).

나) 회계감사인은 감사의 고유 한계상 감사를 통하여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발될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회계감사는 피감사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피감사회사가 일부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분식회계를 실행할 경우 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 이 사건 분식회계의 대상이 된 ‘총공사 예정원가’는 회계추정치로서 그 적정성을 감사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 C이 비록 감사인으로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임무를 일부 게을리 하였으나 적어도 회계감사기준 등이 요구하는 일반적 수준의 감사절차는 모두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 및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60%로,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각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바. 소결론

1) 원고 F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피고 D는 별지4 ‘손해배상표’ 중 ‘J. 피고 D 항소심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별지5 ‘지연손해금(피고 D)’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D와 공동하여 별지4 ‘손해배상표’ 중 ‘I. 피고 C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6 ‘지연손해금(피고 C)’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D와 동일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7. 7. 3. 종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F을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회생사건에서의 회생채권은 별지4 손해배상표 중 ‘J. 피고 D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별지7 ‘지연손해금(피고 회사)’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임을 확정할 수 있다.<각주21>

21) 원고들은 최초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이후 다시 회생절차가 종결되 6. 결론

원고 F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별지4-1 목록의 ‘1심 변경 여부(피고 회사)’란, ‘1심 변경 여부(피고 D)’란, ‘1심 변경 여부(피고 C)’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와 해당 피고 사이에 관한 부분은 위 별지 목록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란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란에 ‘인용’으로 표시된 각 원고 또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

다(다만 별지1-3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별지1-1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BN을 제 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 및 별지1-2 목록 9, 19, 20, 29, 30, 32, 35, 37, 38, 46, 47, 62, 73, 79, 83, 85, 89, 93, 96, 100, 113, 117, 119, 122, 125, 132, 133, 143, 153, 174, 175, 178 내지 180, 197, 198, 204, 209, 225, 235, 240항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 회사 및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의 인용금액이 제1심의 인용금액을 넘기는 하였으나 위 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 D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들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별지4-1 목록의 각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다. 그런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84424,8443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대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소’란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란에 ‘기각’으로 표시된 각 해당 원고의 해당 피고에 대한 항소 및 각 해당 피고의 해당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구자현 최승원

별 지

[별지1-1]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목록

1. AV
2. AY
3. AZ
4. BE
5. BF
6. BO
7. BP
8. BQ
9. BR
10. BS
11. BT
12. BU
13. BV
14. BW
15. BX
16. BY
17. BZ
18. CA

이하 별지 생략(순번 19~32)

[별지1-2]

원고(피항소인) 목록

1. BA
2. BB
3. BC
4. BD
5. BG
6. BH
7. BI
8. BJ
9. BK
10. BL
11. BM
12. CR
13. CS
14. CT
15. CU
16. CV
17. CW
18. CX

이하 별지 생략(순번 19~240)

[별지1-3]

원고(항소인) 목록

1. E
2. F
3. G
4. H
5. I
6. J
7. K
8. L
9. M
10. N
11. P

[별지2-1]

청구금액표

①순번	②원고	③당초파해금액(원)	④소장청구금액 합계(원) = ③ *80%	⑤실제파해금액(원)	⑥파해액 차액(원) = ④-⑤	⑦최종청구금액 (원) = ⑤*80%	⑧차액(원) = ⑦-④
1		286,133,979	228,907,183	290,612,200	61,705,017	232,489,760	3,582,577
2		161,374,450	129,099,560	164,839,450	35,739,890	131,871,560	2,772,000
3		144,670,088	115,736,070	148,197,150	32,461,080	118,557,720	2,821,650
4		109,453,963	87,563,170	112,930,150	25,366,980	90,344,120	2,780,950
5		140,627,208	112,501,766	144,821,750	32,319,984	115,857,400	3,355,634
6		135,064,605	108,051,684	136,296,481	28,244,797	109,037,185	985,501
7		127,645,819	102,116,655	133,072,350	30,955,695	106,457,880	4,341,225
8		7,229,860	5,783,888	7,229,860	1,445,972	5,783,888	0
9		7,456,062	5,964,850	8,659,500	2,694,650	6,447,600	482,750
10		3,712,200	2,969,760	3,997,100	1,027,340	3,197,680	227,920
11		29,719,100	23,775,280	29,719,100	5,943,820	23,775,280	0
12		5,490,000	4,392,000	5,490,000	1,098,000	4,392,000	0
13		14,515,370	11,612,296	15,528,800	3,916,504	12,423,040	810,744
14		17,831,860	14,265,488	18,978,000	4,712,512	15,182,400	916,912
15		65,406,800	52,325,440	65,406,800	13,081,360	52,325,440	0
16		6,918,114	5,534,491	7,846,800	2,312,309	6,277,440	742,949
17		15,130,640	12,104,512	15,955,800	3,851,288	12,764,640	660,128
18		26,569,650	21,255,720	27,697,040	6,441,320	22,157,632	901,912
19		19,087,300	15,269,840	19,087,300	3,817,460	15,269,840	0
20		61,678,020	49,342,416	64,502,600	15,160,184	51,602,080	2,259,664
21		27,456,070	21,964,856	28,526,480	6,561,624	22,821,184	856,328
22		2,259,100	1,807,280	2,385,742	578,462	1,908,594	101,314
23		19,523,730	15,618,984	19,523,730	3,904,746	15,618,984	0
24		8,220,800	6,576,640	8,220,800	1,644,160	6,576,640	0
25		30,231,100	24,184,880	31,311,100	7,126,220	25,048,880	864,000
26		10,340,030	8,272,024	10,832,500	2,560,476	8,666,000	393,976
27		1,119,389	895,511	1,269,800	374,289	1,015,840	120,329
28		9,010,211	7,208,169	9,283,820	2,075,651	7,427,056	218,887
29		2,747,860	2,198,288	2,842,750	644,462	2,274,200	75,912
30		7,591,540	6,073,232	8,706,980	2,633,748	6,965,584	892,352
31		52,574,830	42,059,864	54,209,600	12,149,736	43,367,680	1,307,816
32		44,776,509	35,821,207	46,531,200	10,709,993	37,224,960	1,403,753
33		97,156,479	77,725,183	100,413,700	22,688,517	80,330,960	2,605,777
34		39,728,670	31,782,936	40,823,500	9,040,564	32,658,800	875,864

35	2,501,600	2,001,280	2,583,000	581,720	2,066,400	65,120
36	40,932,450	32,745,960	40,932,450	8,186,490	32,745,960	0
37	60,053,550	48,042,840	61,681,550	13,638,710	49,345,240	1,302,400
38	10,268,058	8,214,446	10,270,500	2,056,054	8,216,400	1,954
39	20,668,150	16,530,520	21,046,000	4,515,480	16,836,800	306,280
40	9,930,218	7,944,174	9,982,660	1,988,486	7,946,128	1,954
41	6,623,300	5,298,640	7,059,800	1,761,160	5,647,840	349,200
42	19,529,169	15,623,335	20,845,000	5,221,665	16,676,000	1,052,665
43	20,295,000	16,234,400	20,700,000	4,465,600	16,560,000	325,600
44	15,820,000	12,656,000	16,227,000	3,571,000	12,981,600	325,600
45	40,687,768	32,550,214	41,695,500	9,145,286	33,356,400	806,186
46	20,409,560	16,327,648	20,967,150	4,639,502	16,773,720	446,072
47	15,923,669	12,738,985	16,384,800	3,645,865	13,107,840	368,905
48	17,375,227	13,990,182	17,974,450	4,074,268	14,379,560	479,378
49	30,121,500	24,097,200	30,242,300	6,145,100	24,193,840	96,640
50	16,954,450	13,563,560	17,361,450	3,797,890	13,889,160	325,600
51	6,348,350	5,078,680	6,693,340	1,614,660	5,354,672	275,992
52	23,228,649	18,582,919	24,121,200	5,538,281	19,296,960	714,041
53	39,415,470	31,532,376	39,415,470	7,883,094	31,532,376	0
54	53,677,610	42,942,088	54,967,800	12,025,712	43,974,240	1,032,152
55	24,502,849	19,602,279	24,988,400	5,386,121	19,990,720	388,441
56	12,706,308	10,165,046	12,973,300	2,808,254	10,378,640	213,594
57	10,081,867	8,065,494	15,528,000	7,462,506	12,422,400	4,356,906
58	10,872,140	8,697,712	11,189,600	2,491,888	8,951,680	253,968
59	16,439,969	13,151,975	16,985,200	3,783,225	13,548,160	396,185
60	27,284,738	21,827,790	28,166,300	6,338,510	22,533,040	705,250
61	53,837,619	43,070,095	55,316,250	12,246,155	44,253,000	1,182,905
62	69,799,759	55,839,807	72,037,750	16,197,943	57,630,200	1,790,393
63	46,682,939	37,346,351	46,684,160	9,337,809	37,347,328	977
64	24,106,950	19,287,160	24,699,100	5,411,940	19,759,280	472,120
65	10,592,900	8,474,320	10,592,900	2,118,580	8,474,320	0
66	19,990,679	15,992,543	20,711,300	4,718,757	16,569,040	576,497
67	76,440,838	61,152,670	78,339,900	17,187,230	62,671,920	1,519,250
68	2,889,868	2,295,894	2,941,500	645,606	2,353,200	57,306
69	7,985,198	6,388,158	8,183,000	1,794,842	6,546,400	158,242
70	3,236,280	2,589,024	3,342,100	753,076	2,673,680	84,656
71	94,948,150	75,958,520	97,186,650	21,228,130	77,749,320	1,790,800
72	42,676,308	34,141,046	43,960,800	9,819,754	35,168,640	1,027,594
73	36,445,000	29,156,000	36,445,000	7,289,000	29,156,000	0
74	29,370,048	23,496,038	29,954,500	6,458,462	23,963,600	467,562
75	100,262,600	80,210,080	100,262,600	20,052,520	80,210,080	0
76	6,295,778	5,036,622	6,436,600	1,399,978	5,149,280	112,658

77		7,938,878	6,351,102	8,120,400	1,769,298	6,496,320	145,218
78		16,059,088	12,847,270	16,554,000	3,706,730	13,243,200	395,930
79		17,340,520	13,872,416	17,763,800	3,891,384	14,211,040	338,624
80		26,956,120	21,564,896	27,606,300	6,041,404	22,085,040	520,144
81		26,863,649	21,490,919	28,193,300	6,707,881	22,559,040	1,068,121
82		1,006,289	805,031	1,036,000	230,969	828,800	23,769
83		3,423,300	2,733,640	3,464,000	725,360	2,771,200	32,560
84		10,554,889	8,443,911	10,827,200	2,383,289	8,661,760	217,849
85		61,414,030	49,131,224	62,953,870	13,822,646	50,363,096	1,231,872
86		23,652,220	18,921,776	24,976,610	6,054,834	19,981,288	1,059,512
87		14,486,720	11,589,376	14,910,000	3,320,624	11,928,000	338,624
88		31,658,150	25,326,520	31,658,150	6,331,630	25,326,520	0
89		12,825,969	10,260,775	13,165,000	2,904,225	10,532,000	271,225
90		46,832,053	37,465,646	46,834,500	9,368,854	37,467,600	1,954
91		35,070,050	28,056,040	35,070,050	7,014,010	28,056,040	0
92		11,097,050	8,877,640	19,633,448	10,755,808	15,706,758	6,829,118
93		32,699,700	26,159,760	33,513,700	7,353,940	26,810,960	651,200
94		6,919,679	5,535,743	7,124,400	1,588,657	5,699,520	163,777
95		29,993,430	23,994,744	30,791,150	6,796,406	24,632,920	638,176
96		126,459,968	101,167,974	126,462,410	25,294,436	101,169,928	1,954
97		7,710,300	6,168,240	7,710,300	1,542,060	6,168,240	0
98		13,836,520	11,069,216	14,239,450	3,170,234	11,391,560	322,344
99		44,155,850	35,324,680	45,686,650	10,361,970	36,549,320	1,224,640
100		6,047,750	4,838,200	6,190,200	1,352,000	4,952,160	113,960
101		21,371,449	17,097,159	22,023,750	4,926,591	17,619,000	521,841
102		10,138,829	8,111,063	10,465,650	2,354,587	8,372,520	261,457
103		7,918,650	6,334,920	8,270,600	1,935,680	6,616,480	281,560
104		19,821,938	15,857,550	20,500,000	4,642,450	16,400,000	542,450
105		36,761,968	29,409,574	37,993,550	8,583,976	30,394,840	985,266
106		6,401,409	5,121,127	6,625,950	1,504,823	5,300,760	179,633
107		158,198,518	126,558,814	163,378,000	36,819,186	130,702,400	4,143,586
108		28,737,100	22,989,680	29,347,600	6,357,920	23,478,080	488,400
109		12,294,150	9,833,320	13,026,750	3,191,430	10,421,400	586,080
110		107,208,330	85,766,664	109,932,500	24,165,836	87,946,000	2,179,336
111		13,686,000	10,948,800	14,500,000	3,551,200	11,600,000	651,200
112		17,552,700	14,042,160	17,919,000	3,876,840	14,335,200	293,040
113		75,800,779	60,640,623	77,840,544	17,199,921	62,272,435	1,631,812
114		12,876,271	10,301,017	13,975,510	3,674,493	11,180,408	879,391
115		125,123,265	100,093,612	127,628,800	27,530,188	102,103,040	2,004,428
116		53,663,738	42,980,990	54,586,000	11,655,010	43,668,800	737,810
117		17,014,650	13,611,720	17,014,650	3,402,930	13,611,720	0
118		18,515,148	14,812,118	18,855,400	4,043,282	15,084,320	272,202

119	2,974,080	2,379,264	3,031,060	651,796	2,424,848	45,584
120	9,806,038	7,844,830	9,955,000	2,110,170	7,964,000	119,170
121	27,215,000	21,772,000	27,822,000	5,850,000	22,097,600	325,600
122	75,113,148	60,090,518	77,345,950	17,255,432	61,876,760	1,786,242
123	12,130,150	9,704,120	12,130,150	2,426,030	9,704,120	0
124	54,064,969	43,251,975	54,973,800	11,721,825	43,979,040	727,065
125	15,858,509	12,286,807	15,608,000	3,321,193	12,486,400	199,593
126	33,038,700	26,430,960	33,492,850	7,061,890	26,794,280	363,320
127	10,842,779	8,674,223	10,925,400	2,251,177	8,740,320	66,097
128	12,261,069	9,808,855	12,478,000	2,669,145	9,982,400	173,545
129	50,488,369	40,390,695	51,844,900	11,454,205	41,475,920	1,085,225
130	15,722,610	12,578,088	15,912,000	3,333,912	12,729,600	151,512
131	5,013,360	4,010,688	5,184,300	1,173,612	4,147,440	136,752
132	22,378,538	17,902,830	22,731,060	4,828,170	18,184,800	281,970
133	8,286,530	6,629,224	8,514,450	1,885,226	6,911,560	182,336
134	13,588,800	10,867,040	13,828,000	2,960,960	11,062,400	195,360
135	41,524,099	33,219,279	41,524,099	8,304,820	33,219,279	0
136	59,772,417	47,817,934	60,411,000	12,593,066	48,328,800	510,866
137	28,206,820	22,565,456	28,512,070	5,946,614	22,809,656	244,200
138	19,367,500	15,494,000	19,367,500	3,873,500	15,494,000	0
139	7,604,469	6,083,575	7,740,000	1,656,425	6,192,000	108,425
140	32,991,400	26,393,120	33,398,400	7,005,280	26,718,720	325,600
141	129,681,500	103,745,200	129,686,000	25,940,800	103,748,800	3,600
142	28,292,712	22,634,170	30,114,400	7,480,230	24,091,520	1,457,350
143	3,405,010	2,724,008	3,433,500	709,492	2,746,800	22,792
144	9,563,482	7,650,786	9,675,000	2,024,214	7,740,000	89,214
145	3,056,000	2,444,800	3,056,000	611,200	2,444,800	0
146	6,202,320	4,961,856	6,300,000	1,338,144	5,040,000	78,144
147	7,036,179	5,628,943	7,729,300	2,100,357	6,183,440	554,497
148	29,127,500	23,302,000	29,127,500	5,825,500	23,302,000	0
149	47,372,570	37,898,056	48,182,500	10,284,444	38,546,000	647,944
150	9,379,031	7,503,225	9,406,300	1,903,075	7,525,040	21,815
151	20,217,390	16,173,912	21,389,550	5,215,638	17,111,640	937,728
152	33,116,165	26,492,932	46,940,075	20,447,143	37,552,060	11,059,128
153	6,156,338	4,925,070	6,346,000	1,420,930	5,076,800	151,730
154	3,565,908	2,852,726	3,649,750	797,024	2,919,800	67,074
155	3,565,908	2,852,726	162,869,350	160,016,624	130,295,480	127,442,754
156	197,294,468	157,835,574	197,785,420	39,949,846	158,228,336	392,762
157	6,547,370	5,237,896	7,392,550	2,154,654	5,914,040	676,144
158	11,787,312	9,429,850	12,219,150	2,789,300	9,775,320	345,470
159	41,660,100	33,328,080	42,474,100	9,146,020	33,979,280	651,200
160	43,865,050	35,092,040	46,653,000	11,560,960	37,322,400	2,230,360

161	27,985,638	22,388,510	28,623,000	6,234,490	22,898,400	509,890
162	13,751,338	11,001,070	13,941,000	2,939,930	11,152,800	151,730
163	11,084,051	8,867,241	11,392,150	2,524,909	9,113,720	246,479
164	46,355,979	37,084,783	50,211,900	13,127,117	40,169,520	3,084,737
165	3,850,389	3,080,311	3,920,800	840,489	3,136,640	56,329
166	10,846,500	8,677,200	11,050,000	2,372,800	8,840,000	162,800
167	22,522,760	18,018,208	22,937,900	4,919,692	18,350,320	332,112
168	4,832,876	3,866,301	5,091,050	1,224,749	4,072,840	206,539
169	1,426,179	1,140,943	2,537,600	1,396,657	2,030,080	889,137
170	13,036,700	10,429,360	16,619,500	6,190,140	13,295,600	2,866,240
171	10,071,299	8,057,039	10,501,600	2,444,561	8,401,280	344,241
172	1,107,220	885,776	1,123,500	237,724	898,800	13,024
173	5,791,730	4,633,384	5,877,200	1,243,816	4,701,760	68,376
174	573,300	458,640	614,000	155,360	491,200	32,560
175	2,948,400	2,358,720	5,274,000	2,915,280	4,219,200	1,860,480
176	28,634,499	22,907,599	29,059,000	6,151,401	23,247,200	339,601
177	108,907,590	87,126,072	113,234,000	26,107,928	90,587,200	3,461,128
178	19,481,670	15,585,336	20,081,850	4,496,514	16,065,480	480,144
179	11,030,390	8,824,312	15,135,800	6,311,488	12,108,640	3,284,328
180	54,124,867	43,299,894	54,124,867	10,824,973	43,299,894	0
181	91,852,300	73,481,840	91,852,300	18,370,460	73,481,840	0
182	19,502,369	15,601,895	19,760,000	4,158,105	15,808,000	206,105
183	37,534,550	30,027,640	38,287,500	8,259,860	30,630,000	602,360
184	5,053,869	4,043,095	5,096,930	1,053,835	4,077,544	34,449
185	5,682,390	4,545,912	5,837,050	1,291,138	4,669,640	123,728
186	10,349,810	8,279,848	11,577,050	3,297,202	9,261,640	981,792
187	10,504,326	8,403,461	10,621,000	2,217,539	8,496,800	93,339
188	10,388,900	8,311,120	11,202,900	2,891,780	8,962,320	651,200
189	22,595,969	18,076,775	22,605,000	4,528,225	18,084,000	7,225
190	13,673,409	10,938,727	13,841,500	2,902,773	11,073,200	134,473
191	14,126,838	11,301,470	14,520,000	3,218,530	11,616,000	314,530
192	40,507,569	32,406,055	40,928,000	8,521,945	32,742,400	336,345
193	10,230,000	8,184,000	10,230,000	2,046,000	8,184,000	0
194	4,796,860	3,837,488	5,008,500	1,171,012	4,006,800	169,312
195	23,649,192	18,919,354	24,175,850	5,256,496	19,340,680	421,326
196	4,440,868	3,552,694	5,178,500	1,625,806	4,142,800	590,106
197	12,220,969	9,776,775	12,560,000	2,783,225	10,048,000	271,225
198	209,700,769	167,760,615	220,011,300	52,250,685	176,009,040	8,248,425
199	15,361,810	12,289,448	15,576,350	3,286,902	12,461,080	171,632
200	3,899,798	3,119,838	3,975,500	855,662	3,180,400	60,562
201	4,773,027	3,813,422	4,849,000	1,030,578	3,879,200	60,778
202	3,550,409	2,840,327	4,736,100	1,895,773	3,788,380	948,553

203		15,609,789	12,487,831	18,651,300	6,163,469	14,921,040	2,433,209
204		3,164,869	2,531,895	3,219,000	687,105	2,575,200	43,305
205		11,027,771	8,822,217	11,230,250	2,408,033	8,984,200	161,883
206		5,002,910	4,002,328	5,150,000	1,147,672	4,120,000	117,672
207		4,286,174	3,428,939	7,760,324	4,331,385	6,208,259	2,779,320
208		24,787,778	19,830,222	25,010,000	5,179,778	20,008,000	177,778
209		1,909,798	1,527,838	1,944,800	416,962	1,555,840	28,002
210		120,616,899	96,493,519	123,483,400	26,989,881	98,786,720	2,293,201
211		24,062,211	19,249,769	87,967,620	68,717,851	70,374,096	51,124,327
212		3,407,450	2,725,960	3,468,500	742,540	2,774,800	48,840
213		2,217,980	1,774,384	3,249,200	1,474,816	2,599,360	824,976
214		59,263,167	47,410,534	60,145,000	12,734,466	48,116,000	705,466
215		22,818,229	18,254,583	22,819,450	4,564,867	18,255,560	977
216		48,431,260	38,745,008	49,823,200	11,078,192	39,858,560	1,113,552
217		3,507,500	2,806,000	3,711,000	905,000	2,968,800	162,800
218		13,529,300	10,823,440	14,343,500	3,520,060	11,474,800	651,360
219		283,468	226,774	314,400	87,626	251,520	24,746
220		49,933,581	39,950,865	54,815,588	14,864,723	43,852,470	3,901,606
221		3,793,870	3,035,096	3,931,910	896,814	3,145,528	110,432
222		6,004,088	4,803,270	6,112,350	1,309,080	4,889,880	86,610
223		69,248,640	55,398,912	70,542,900	15,143,988	56,434,320	1,035,408
224		1,617,069	1,293,655	1,671,200	377,545	1,336,960	43,305
225		71,884,851	57,507,881	76,198,851	18,690,970	60,959,081	3,451,200
226		1,285,929	1,028,743	1,361,800	333,057	1,089,440	60,697
227		22,952,863	18,362,290	23,174,000	4,811,710	18,539,200	176,910
228		35,316,111	28,252,889	36,426,000	8,173,111	29,140,800	887,911
229		2,103,950	1,683,160	2,165,000	481,840	1,732,000	48,840
230		4,730,040	3,784,032	5,169,600	1,385,568	4,135,680	351,648
231		1,875,083	1,500,067	1,909,000	408,933	1,527,200	27,133
232		8,442,280	6,753,824	8,731,250	1,977,426	6,985,000	231,176
233		12,984,838	10,387,870	13,661,500	3,273,630	10,929,200	541,330
234		80,731,727	64,585,382	83,575,300	18,989,918	66,860,240	2,274,858
235		10,172,450	8,137,960	11,259,600	3,121,640	9,007,680	869,720
236		4,135,733	3,308,586	4,190,000	881,414	3,352,000	43,414
237		46,086,337	36,869,070	47,233,670	10,364,600	37,786,936	917,866
238		14,310,273	11,448,218	14,579,300	3,131,082	11,663,440	215,222
239		12,831,609	10,265,287	13,229,750	2,964,463	10,583,800	318,513
240		5,499,738	4,399,790	5,608,000	1,208,210	4,486,400	86,610
241		7,078,959	5,663,167	8,573,650	2,910,483	6,858,920	1,195,753
242		4,086,080	3,268,864	4,191,900	923,036	3,353,520	84,656
243		84,150,319	67,320,255	87,195,900	19,875,645	69,756,720	2,436,465
244		8,582,749	6,866,199	8,742,700	1,876,501	6,994,160	127,961

245	5,204,007	4,163,206	11,028,398	6,865,192	8,822,718	4,659,513
한계	7,405,096,778	5,924,077,423	7,863,811,387	1,939,733,964	6,291,049,110	366,971,687

[별지2-2]

청구금액표

순번	원고	③당초피해금액(원)	④소장청구금액 합계(원) = ③*80%	⑤실제피해금액(원)	⑥피해액 차액(원) = ⑤-④	⑦최종 청구금액(원) = ⑤*80%	⑧차액(원) = ⑦-⑥
1		671,884,841	537,507,873	176,343,117	-361,164,756	141,074,494	-396,433,379
2		106,879,200	85,503,360	104,915,400	19,412,040	83,932,320	-1,571,040
3		232,883,900	186,267,120	74,113,012	-112,154,108	59,290,410	-126,976,710
4		187,712,854	150,170,283	166,309,060	16,132,767	132,242,440	-17,927,843
5		15,522,066	12,417,653	15,481,000	3,063,347	12,384,800	-32,853
6		4,532,430	3,625,944	3,012,230	-613,714	2,409,784	-1,216,160
7		20,018,600	16,014,880	18,438,600	2,423,720	14,750,880	-1,264,000
8		57,909,246	46,327,397	57,292,800	10,965,403	45,834,240	-499,157
9		31,190,972	24,952,778	30,080,300	5,127,522	24,064,240	-886,538
10		8,368,320	6,694,656	8,349,000	1,654,344	6,679,200	-15,456
11		10,668,928	8,527,142	10,666,800	2,039,658	8,453,440	-73,702
12		12,520,938	10,016,750	9,686,400	-360,350	7,725,120	-2,291,630
13		53,744,400	42,995,520	53,684,300	10,688,780	42,947,440	-48,080
14		21,393,588	17,114,870	20,388,850	3,273,980	16,311,080	-803,790
15		34,552,667	27,642,134	33,086,900	5,444,766	26,469,520	-1,172,614
16		23,343,100	18,674,480	19,721,800	1,047,320	15,777,440	-2,897,040
17		119,847,682	95,878,146	117,853,200	21,975,054	94,282,560	-1,595,586
18		74,623,269	59,698,615	67,373,400	7,674,785	53,898,720	-5,799,895
19		15,702,860	10,962,288	8,252,500	-2,709,788	6,802,000	-4,360,288
20		26,215,810	20,972,648	23,305,450	2,332,802	18,644,360	-2,328,288
21		1,878,440	1,502,752	894,000	-608,752	715,200	-787,552
22		28,198,031	22,558,425	28,062,500	5,504,075	22,450,000	-108,425
23		12,761,362	10,209,090	12,614,500	2,405,410	10,091,600	-117,490
24		2,148,640	1,718,912	1,917,200	198,288	1,533,760	-185,152
25		21,783,314	17,426,651	21,775,300	4,348,649	17,420,240	-6,411
26		140,457,479	112,365,983	68,508,700	-43,857,283	54,806,960	-57,559,023
27		5,968,369	4,774,695	5,644,900	870,205	4,515,920	-258,775
28		4,596,262	3,677,010	4,546,670	869,660	3,637,336	-39,674
29		4,833,267	3,866,614	4,807,000	940,386	3,845,600	-21,014
30		39,534,731	31,627,785	39,524,000	7,896,215	31,619,200	-8,585
31		3,176,147	2,540,918	3,080,800	539,882	2,464,640	-76,278
32		3,063,138	2,450,510	53,700	-2,396,810	42,960	-2,407,550
33		7,707,900	6,166,320	7,424,000	1,257,680	5,939,200	-227,120
34		9,172,514	7,338,011	538,050	-6,799,961	430,440	-6,907,571
35		6,889,519	5,511,615	5,889,000	377,385	4,711,200	-800,415
36		21,909,200	17,527,360	20,974,000	3,446,640	16,779,200	-748,160
37		9,367,142	7,493,714	9,051,380	1,557,666	7,241,104	-252,610
38		75,486,820	60,389,456	62,882,600	1,693,144	50,906,080	-10,883,376
합계		2,127,387,946	1,701,910,357	1,315,406,409	-386,508,949	1,062,325,127	-649,585,230

[별지3-1]

청구금액표

①순번	②원고	③당초피해금액(원)	④소장청구금액 합계(원) = ③ *80%	⑤실제피해액(원)	⑥피해액 차액(원) = ⑤-④	⑦최종청구금액 (원) = ⑤* 80%
1		15,522,066	12,417,653	15,481,000	3,063,347	12,384,800
2		3,712,200	2,969,760	3,997,100	1,027,340	3,197,680
3		8,368,320	6,694,656	8,349,000	1,654,344	6,679,200
4		10,592,900	8,474,320	10,592,900	2,118,580	8,474,320
5		36,445,000	29,156,000	36,445,000	7,289,000	29,156,000
6		41,524,099	33,219,279	41,524,099	8,304,820	33,219,279
7		11,787,312	9,429,850	12,219,150	2,789,300	9,775,320
8		2,948,400	2,358,720	5,274,000	2,915,280	4,219,200
9		4,286,174	3,428,939	7,760,324	4,331,385	6,208,259
10		49,938,581	39,950,865	54,815,588	14,864,723	43,852,470
11		71,884,851	57,507,881	76,198,851	18,690,970	60,959,081
합계		257,009,903	205,607,922	272,657,012	67,049,090	218,125,610

[별지3-2]

청구금액표

①순번	②원고	③실제피해액(원)	④1심 인정손해액(원)	⑤항소금액(원) =(③-④)* 80%
1		176,343,117	72,837,973	82,804,115
2		290,612,200	241,618,081	39,195,295
3		164,839,450	124,232,630	32,485,456
4		74,113,012	44,151,100	23,969,530
5		136,296,481	457,071	108,671,528
6		18,438,600	8,835,050	7,682,840
7		100,413,700	68,080,750	25,866,360
8		40,932,450	32,542,000	6,712,360
9		41,695,500	15,461,989	20,986,809
10		17,361,450	12,325,800	4,028,520
11		24,121,200	16,313,942	6,245,806
12		39,415,470	18,314,720	16,880,600
13		46,684,160	35,355,620	9,062,832
14		62,953,870	26,007,354	29,557,213
15		53,684,300	42,355,450	9,063,080
16		35,070,050	26,720,500	6,679,640
17		19,633,448	8,695,731	8,750,174
18		14,239,450	5,800,333	6,751,294
19		13,975,510	3,813,600	8,129,528
20		33,492,850	19,759,995	10,986,284
21		28,512,070	8,217,391	16,235,743
22		33,398,400	26,577,100	5,457,040
23		30,114,400	21,132,917	7,185,186
24		46,940,075	26,497,438	16,354,110
25		68,508,700	754,880	54,203,056
26		50,211,900	31,672,700	14,831,360
27		54,124,867	39,849,167	11,420,560
28		38,287,500	30,514,395	6,218,484
29		70,542,900	53,413,506	13,703,515
30		23,174,000	7,469,791	12,563,367
31		538,050	512,515	20,428
32		11,028,398	5,117,735	4,728,530
합계		1,859,697,528	1,075,409,224	627,430,643

000	1.000	100.0000000	-	949.999	200.00000	30.700.000	20.156.700	30.156.700	1.749.6300	40.407.000	12.00.0000	0	-40.000.000
001	2.140	29.640.000	13.077.400	348.000	15.000.700	16.227.000	16.727.000	17.000.700	8.700.000	67.000.00	900.0000	-320.000	-10.000.000
002	30.000	300.000.000	2.000.000.000	3.000.211	30.000.000	30.000.000	31.000.000	3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03	40.000	400.000.000	4.000.000.000	4.000.000	40.000.000	40.000.000	41.000.000	4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04	50.000	500.000.000	5.000.000.000	5.000.000	50.000.000	50.000.000	51.000.000	5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05	60.000	600.000.000	6.000.000.000	6.000.000	60.000.000	60.000.000	61.000.000	6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06	70.000	700.000.000	7.000.000.000	7.000.000	70.000.000	70.000.000	71.000.000	7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07	80.000	800.000.000	8.000.000.000	8.000.000	80.000.000	80.000.000	81.000.000	8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08	90.000	900.000.000	9.000.000.000	9.000.000	90.000.000	90.000.000	91.000.000	9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09	1.000	10.000.000	100.000.000	1.000.000	10.000.000	10.000.000	11.000.000	1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10	2.000	20.000.000	200.000.000	2.000.000	20.000.000	20.000.000	21.000.000	2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11	3.000	30.000.000	300.000.000	3.000.000	30.000.000	30.000.000	31.000.000	3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12	4.000	40.000.000	400.000.000	4.000.000	40.000.000	40.000.000	41.000.000	4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13	5.000	50.000.000	500.000.000	5.000.000	50.000.000	50.000.000	51.000.000	5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14	6.000	60.000.000	600.000.000	6.000.000	60.000.000	60.000.000	61.000.000	6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15	7.000	70.000.000	700.000.000	7.000.000	70.000.000	70.000.000	71.000.000	7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16	8.000	80.000.000	800.000.000	8.000.000	80.000.000	80.000.000	81.000.000	8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17	9.000	90.000.000	900.000.000	9.000.000	90.000.000	90.000.000	91.000.000	9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18	10.000	1.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1.000.000	1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19	20.000	2.000.000.000	20.00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21.000.000	2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20	30.000	3.000.000.000	30.00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1.						

[illegible]

164	판결	800	9,373,680	-	1,680,324	8,335,479	9,373,680	93,364,075	9,373,680	3,771,667	39,560,408	3,771,667	0	-3,208,403
165	판결	280	3,076,000	-	72,127	3,003,873	3,003,873	1,030,888	3,003,873	1,801,240	201,153	1,602,087	0	-161,152
166	판결	720	8,300,000	-	730,960	7,569,040	8,300,000	3,096,000	6,199,600	3,701,760	1,328,082	3,371,744	0	-1,892,662
167	판결	2,010	7,779,000	-	389,111	7,389,889	7,779,000	3,195,085	5,185,209	9,118,171	12,288,962	9,118,171	0	-12,288,962
168	판결	3,100	30,295,000	50,173,55	28,215,285	29,127,500	29,127,500	28,127,500	28,127,500	17,250,500	8,738,250	17,250,500	0	-8,738,250
169	판결	500	1,904,000	-	19,040	885,100	1,904,000	893,178	885,100	54,900	3,949,000	54,900	0	-3,949,000
170	판결	3,770	46,165,000	-	2,259,040	44,255,960	46,165,000	47,270,802	45,239,257	3,825,327	18,170,802	3,825,327	0	-14,345,475
171	판결	2,760	3,400,000	-	472,500	2,927,500	3,400,000	3,835,751	3,835,751	3,321,200	20,961,100	3,321,200	0	-12,640,100
172	판결	27,810	290,880,000	10,007,000,000	1,559,700	19,638,800	27,389,500	18,728,398	18,639,000	1,128,137	1,975,000	1,128,137	0	-15,296,125
173	판결	12,700	28,282,500	-	361,005	27,921,495	28,883,500	25,800,000	27,800,000	1,626,497	13,380,000	1,626,497	0	-8,899,200
174	판결	25,087	187,355,070	11,814,000,000	3,471,811	12,683,179	66,340,073	22,697,408	62,665,173	1,549,000	10,000,000	1,549,000	0	-8,000,000
175	판결	8,190	44,000,000	2,578,000,000	225,170	5,692,830	8,390,000	83,360,000	60,910,277	3,807,000	1,677,847	3,807,000	0	-1,677,847
176	판결	3,600	13,000,000	-	300,000	12,700,000	13,000,000	12,107,000	12,107,000	729,800	8,050,200	729,800	0	-7,320,400
177	판결	340	3,101,200	-	31,012	3,070,188	3,101,200	1,917,200	1,917,200	1,150,000	3,751,600	1,150,000	0	-2,601,600
178	판결	600	3,600,000	-	111,000	3,489,000	3,600,000	3,327,000	3,327,000	2,772,000	1,000,000	2,772,000	0	-1,772,000
179	판결	39,810	160,880,000	-	8,895,000	151,985,000	160,880,000	156,379,000	156,379,000	8,502,400	403,120,000	8,502,400	0	-403,120,000
180	판결	10,710	199,800,000	2,100,000,000	-	199,780,000	197,780,000	1,917,000,000	1,917,000,000	11,807,125	59,320,000	11,807,125	0	-48,512,875
181	판결	720	7,980,000	-	130,960	7,849,040	7,980,000	7,802,100	7,802,100	435,700	2,170,000	435,700	0	-1,734,300
182	판결	9,100	22,100,000	27,000,000	-	21,880,000	21,770,000	21,770,000	21,770,000	1,100,000	8,330,000	1,100,000	0	-7,230,000
183	판결	1,700	52,210,100	-	849,810	51,360,290	52,210,100	51,360,290	51,360,290	0	33,960,000	0	0	33,960,000
184	판결	9,800	45,220,000	3,710,000,000	1,666,000	43,554,000	45,220,000	44,567,000	44,567,000	2,100,000	12,410,000	2,100,000	0	-10,310,000
185	판결	9,000	36,000,000	-	3,711,000	32,289,000	36,000,000	42,810,000	42,810,000	2,570,000	1,207,000	2,570,000	0	-1,363,000
186	판결	21,110	127,707,250	5,949,000,000	1,500	28,507,000	140,708,000	77,680,000	78,527,000	8,020,000	28,520,000	8,020,000	0	-20,500,000
187	판결	4,700	20,620,000	-	850,000	19,770,000	20,620,000	23,551,000	23,551,000	1,666,000	8,000,000	1,666,000	0	-6,334,000
188	판결	1,250	15,980,000	-	720,500	15,259,500	15,980,000	15,738,400	15,738,400	1,823,250	8,110,000	1,823,250	0	-6,886,750
189	판결	2,700	11,380,100	-	311,270	11,068,830	11,380,100	10,900,000	10,900,000	6,000,000	3,900,000	6,000,000	0	-2,900,000
190	판결	10,620	75,490,000	2,536,700,000	1,630,000	73,860,000	75,490,000	74,727,000	74,727,000	1,800,000	18,720,000	1,800,000	0	-16,920,000
191	판결	520	3,900,000	-	90,000	3,810,000	3,900,000	3,820,000	3,820,000	2,800,000	1,100,000	2,800,000	0	-1,700,000
192	판결	100	11,000,000	-	1,000,000	10,000,000	11,000,000	10,000,000	10,000,000	8,200,000	3,200,000	8,200,000	0	-5,000,000
193	판결	3,700	22,907,000	-	570,100	22,336,900	22,907,000	23,940,770	23,940,770	3,300,000	27,610,000	3,300,000	0	-4,703,000
194	판결	820	3,107,100	-	305,100	2,802,000	3,107,100	3,107,100	3,107,100	2,200,000	1,907,000	2,200,000	0	-3,093,000
195	판결	280	2,670,000	90,000,000	-	2,670,000	2,737,000	2,737,000	2,737,000	1,100,000	1,100,000	1,100,000	0	-700,000
196	판결	1,400	10,000,000	-	2,000,000	8,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9,700,000	9,700,000	9,700,000	0	-300,000
197	판결	1,700	10,300,000	-	349,100	9,950,900	10,300,000	9,950,900	9,950,900	5,900,000	2,900,000	5,900,000	0	-2,900,000
198	판결	1,200	11,370,000	-	21,700	11,348,300	11,370,000	11,070,000	11,070,000	1,100,000	2,900,000	1,100,000	0	-1,800,000
199	판결	1,000	5,600,000	-	190,000	5,410,000	5,600,000	5,400,000	5,400,000	3,270,000	1,000,000	3,270,000	0	-2,270,000
200	판결	600	3,307,200	-	110,500	3,196,700	3,307,200	3,307,200	3,307,200	3,250,000	3,250,000	3,250,000	0	-50,000
201	판결	100	60,000,000	-	17,000	59,983,000	60,000,000	59,983,000	59,983,000	30,000	1,000,000	30,000	0	-970,000
202	판결	900	3,270,000	-	165,900	3,104,100	3,270,000	3,270,000	3,270,000	0	1,250,000	0	0	1,250,000
203	판결	9,800	29,000,000	-	530,200	28,469,800	29,000,000	28,500,000	28,500,000	17,100,000	17,100,000	17,100,000	0	-11,900,000
204	판결	16,400	170,200,000	-	1,300,000	168,900,000	170,200,000	171,500,000	171,500,000	6,000,000	10,000,000	6,000,000	0	-4,000,000
205	판결	1,000	8,807,200	42,500,000	3,170	8,794,030	8,807,200	8,807,200	8,807,200	4,500,000	1,000,000	4,500,000	0	-3,500,000
206	판결	400	4,800,000	-	117,000	4,683,000	4,800,000	4,600,000	4,600,000	3,800,000	1,000,000	3,800,000	0	-800,000
207	판결	16,800	81,970,000	3,000,000,000	-	81,950,000	82,500,000	82,500,000	82,500,000	3,000,000	1,000,000	3,000,000	0	-2,000,000
208	판결	33,710	186,190,000	8,800,000,000	780,210	185,409,790	186,190,000	18,100,000	18,1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900,000
209	판결	2,410	12,582,000	7,010,000,000	205,510	12,376,490	12,582,000	16,000,000	16,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900,000
210	판결	10,520	87,880,000	3,000,000,000	-	84,880,000	86,420,000	86,420,000	86,420,000	3,000,000	1,000,000	3,000,000	0	-2,000,000
211	판결	21,000	97,000,000	5,100,000,000	-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3,500,000	1,000,000	3,500,000	0	-2,500,000
212	판결	1,800	79,700,000	-	3,000,000	76,700,000	79,700,000	78,500,000	78,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1,000,000
213	판결	10,000	430,270,000	17,000,000,000	1,000,000	429,270,000	430,270,000	430,270,000	430,27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1,000,000
214	판결	1,370	8,500,000	1,370,000,000	1,000,000	7,500,000	8,500,000	8,500,000	8,500,000	2,000,000	1,000,000	2,000,000	0	-1,000,000
215	판결	11,010	62,177,000	73,000,000,000	200,000	61,977,000	62,177,000	62,177,000	62,177,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1,000,000
216	판결	3,800	15,000,000	8,117,000,000	100,000	14,9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1,000,000
217	판결	600	10,000,000	-	100,000	9,9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1,000,000
218	판결	3,700	10,000,000	8,000,000,000	500,000	9,5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1,000,000
219	판결	7,500	31,970,000	9,170,000,000	850,000	31,12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1,000,000

226	ES2	1.240	19.881.706	-	229.083	13.637.117	33.841.360	14.617.113	13.817.117	31.712.717	81.811.113	31.712.717	0	-4.580.113
227	ES2	2.990	14.320.000	-	529.589	13.997.175	14.320.000	13.997.175	13.997.175	13.997.175	81.811.113	13.997.175	0	-4.580.113
228	ES2	1.310	40.500.000	-	110.126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81.811.113	40.500.000	0	-4.580.113
229	ES2	1.715	18.200.000	-	190.111	18.200.000	18.200.000	18.200.000	18.200.000	18.200.000	81.811.113	18.200.000	0	-4.580.113
230	ES2	1.850	33.500.000	-	110.126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81.811.113	33.500.000	0	-4.580.113
231	ES2	2.685	24.774.750	-	759.982	24.774.750	24.774.750	24.774.750	24.774.750	24.774.750	81.811.113	24.774.750	0	-4.580.113
232	ES2	500	3.730.000	-	137.825	3.730.000	3.730.000	3.730.000	3.730.000	3.730.000	81.811.113	3.730.000	0	-4.580.113
233	ES2	2.290	13.000.000	-	455.569	13.000.000	13.000.000	13.000.000	13.000.000	13.000.000	81.811.113	13.000.000	0	-4.580.113
234	ES2	18.000	230.811.300	-	13.700.819	230.811.300	230.811.300	230.811.300	230.811.300	230.811.300	81.811.113	230.811.300	0	-4.580.113
235	ES2	1.820	20.070.000	-	100.126	20.070.000	20.070.000	20.070.000	20.070.000	20.070.000	81.811.113	20.070.000	0	-4.580.113
236	ES2	600	3.000.000	-	130.126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81.811.113	3.000.000	0	-4.580.113
237	ES2	500	3.000.000	-	130.126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81.811.113	3.000.000	0	-4.580.113
238	ES2	500	3.000.000	-	130.126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81.811.113	3.000.000	0	-4.580.113
239	ES2	500	3.000.000	-	130.126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81.811.113	3.000.000	0	-4.580.113
240	ES2	500	3.000.000	-	130.126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81.811.113	3.000.000	0	-4.580.113
241	ES2	500	3.000.000	-	130.126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81.811.113	3.000.000	0	-4.580.113
242	ES2	500	3.000.000	-	130.126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81.811.113	3.000.000	0	-4.580.113
243	ES2	500	3.000.000	-	130.126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81.811.113	3.000.000	0	-4.580.113
244	ES2	500	3.000.000	-	130.126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81.811.113	3.000.000	0	-4.580.113
245	ES2	500	3.000.000	-	130.126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81.811.113	3.000.000	0	-4.580.113
246	ES2	500	3.000.000	-	130.126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81.811.113	3.000.000	0	-4.580.113
247	ES2	500	3.000.000	-	130.126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81.811.113	3.000.000	0	-4.580.113
248	ES2	500	3.000.000	-	130.126	3.000.000	3.000.000</							

27회 분배	8,740	27,867,683.30	19,161,120.00	684,740.00	8,131,947.00	8,577,659.00	8,747,565.00	8,131,947.00	5,184,190.00	28,296,984.00	8,874,616.00	5,026,522.00	2,716,464.00
27회 분배	2,280	22,857,280.00	8,098,000.00	361,258.00	25,612,142.00	20,287,000.00	19,136,162.00	20,612,162.00	11,427,026.00	8,146,648.00			45,288,480.00
27회 분배	760	8,191,900.00	-	181,258.00	8,052,642.00	8,191,900.00	8,052,642.00	8,052,642.00	2,492,585.00	8,215,193.00	3,852,612.00	0.00	1,215,192.00
27회 분배	19,116	67,195,940.00	-	3,496,721.00	67,297,179.00	57,145,000.00	66,297,179.00	67,297,179.00	8,987,830.00	28,859,154.00	89,874,302.00	0.00	28,859,173.00
28회 분배	1,160	8,742,700.00	-	243,217.00	8,529,183.00	8,742,700.00	8,529,183.00	8,529,183.00	5,111,569.00	2,526,754.00	5,111,569.00	0.00	2,526,754.00
28회 분배	16,108	66,851,430.00	5,282,459.00	-	8,654,889.00	8,821,568.00	8,654,889.00	8,821,568.00	2,494,262.00	8,209,252.00	2,814,528.00	977,378.00	4,287,630.00
28회 분배	26,890	163,245,400.00	12,536,220.00	3,779,000.00	169,112,620.00	12,782,268.00	127,612,690.00	128,112,690.00	3,459,149.00	11,735,628.00			80,857,600.00
28회 분배	1,270	12,845,600.00	3,556,754.00	5,490.00	16,407,844.00	11,828,286.00	16,177,930.00	16,352,787.00	3,687,054.00	3,215,256.00	603,487.00	2,864,864.00	125,488.00

- ※ '피고 D 항소심 인용금액'란 및 '1, 2심 인용금 차액(피고 D)'란에 각 음영처리된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실제로는 인용금액이 증액되지 아니함.
- ※ 각 원고의 '매입가액' 및 '매도주식' 또는 '보유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거에 나타난 전체 거래기간 취득 주식 등 중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2012. 3. 20.부터 2014. 2. 5.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 등만을 대상으로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함. 끝.

[별지4-1]

당사자별 항소심 결과내역

원고	피고 회사			피고			피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	1심 판결 여부 (피고 회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	1심 판결 여부 (피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	1심 판결 여부 (피고)
001.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인용	기각	변경	인용	기각	변경
002.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인용	기각	변경	기각	인용	변경
003.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인용	기각	변경	기각	인용	변경
004. 원고	해당없음	인용	변경	해당없음	인용	변경	해당없음	인용	변경
005. 원고	해당없음	인용	변경	해당없음	인용	변경	해당없음	인용	변경
006.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007. 원고	해당없음	인용	변경	해당없음	인용	변경	해당없음	인용	변경
008.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인용	기각	변경	기각	인용	변경
009.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인용	기각	변경	인용	기각	변경
010. 원고	해당없음	인용	변경	해당없음	인용	변경	해당없음	인용	변경
011.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012.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013. 원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1심확정	인용	해당없음	변경	인용	해당없음	변경
014.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015. 원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1심확정	기각	해당없음	1심유지	기각	해당없음	1심유지
016.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017.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018.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019.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020. 원고	해당없음	인용	변경	해당없음	인용	변경	해당없음	인용	변경
021.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022.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023.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024.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025.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026.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인용	기각	변경	기각	인용	변경
027.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028.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029.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030.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031.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032. 원고	해당없음	인용	변경	해당없음	인용	변경	해당없음	인용	변경
033. 원고	해당없음	인용	변경	해당없음	인용	변경	해당없음	인용	변경
034.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035.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276. 원고	해당없음	인용	변경	해당없음	인용	변경	해당없음	인용	변경
277.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278.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279.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280.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281. 원고	해당없음	인용	변경	해당없음	인용	변경	해당없음	인용	변경
282. 원고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기각	1심유지	해당없음	인용	변경
283. 원고	해당없음	인용	변경	해당없음	인용	변경	기각	인용	변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란에 '인용'으로 표시된 부분과 '1심 변경 여부'란에 '변경'으로 표시된 부분 중 각 음영처리된 부분은 제1심판결보다 '인용금액' 자체가 감액된 것은 아니나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한 제1심판결이 잘못되어 이를 일부 감액한 부분이다.

[별지5]

지연손해금(피고 D)

1. 원고 AV, AY, AZ, BE, BF,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²²⁾

: 별지4 J.항 기재 총 인용금액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별지4 H.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서는 원고들이 구하는 2014. 6. 1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인 별지4 K.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서는 2014. 6. 10.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원고 E, G, H, I, J, K, N, P²³⁾

: 별지4 J.항 기재 총 인용금액에 대하여 위 2014. 6. 10.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원고 L, M²⁴⁾

: 별지4 J.항 기재 총 인용금액 중 별지2-1의 '④소장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서는 위 2014. 6. 10.부터,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구하는 2016. 2. 20.부터 각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2) 제1심 일부 승소 원고의 항소가 일부 인용되고 총 인용금액이 소장청구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이다.

23) 제1심 전부 패소 원고의 항소가 일부 인용되고 총 인용금액이 소장청구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이다.

24) 제1심 전부 패소 원고의 항소가 일부 인용되고 총 인용금액이 소장청구금액을 넘는 경우이다.

4. 원고 CN²⁵⁾

: 별지4 J.항 기재 총 인용금액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3,070,641원에 대하여서는 위 2014. 6. 10.부터 2017. 1.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인 2,959,831원 중 별지2-1의 '소장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인 1,092,565원(= 4,163,206원 - 3,070,641원)에 대하여서는 2014. 6. 10.부터, 나머지 1,867,266원(= 2,959,831원 - 1,092,565원)에 대하여서는 2016. 2. 20.부터 각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 원고 BA, BB, BD, BG, CS,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²⁶⁾

: 별지4 J.항 기재 총 인용금액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 원고 EO, EP, EQ, ER, ES, ET²⁷⁾

: 별지4 J.항 기재 총 인용금액 중 별지2-1의 '④소장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서는 위 2014. 6. 10.부터,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서는 2016. 2. 20.부터 각 2017. 1. 2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 나머지 원고들(원고 F 제외)²⁸⁾

25) 제1심 일부 승소 원고의 항소가 일부 인용되고 총 인용금액이 소장청구금액을 넘는 경우이다.

26) 피고 D의 항소가 일부 인용된 경우이다.

27) 제1심과 총 인용금액은 동일하나 총 인용금액이 소장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28)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 별지4 J.항 기재 총 인용금액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7. 1. 2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끝.

[별지6]

지연손해금(피고 C)

1. 원고 AV, BF, BR, BU, BW, CA, CB, CD, CH, L, CM²⁹⁾

: 별지4 I.항 기재 총 인용금액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별지4 H.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서는 2014. 6. 10.부터 2017. 1. 2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인 별지4 L.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서는 2014. 6. 10.부터 2018. 11. 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원고 E, G, H, I, J, K, M, N, P³⁰⁾

: 별지4 I.항 기재 총 인용금액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8. 11. 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원고 EP, ES³¹⁾

: 별지4 I.항 기재 총 인용금액 중 별지2-1의 '소장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서는 2014. 6. 10.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서는 2016. 2. 20.부터 각 2018. 11. 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 나머지 원고들(원고 F 제외)³²⁾

: 별지4 I.항 기재 총 인용금액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8. 11. 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끝.

29) 제1심 일부 승소 원고의 항소가 일부 인용되고 총 인용금액이 소장청구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이다.

30) 제1심 전부 패소 원고의 항소가 일부 인용되고 총 인용금액이 소장청구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이다.

31) 피고 C의 항소가 일부 인용되고 총 인용금액이 소장청구금액을 넘는 경우이다.

32) 피고 C의 항소가 일부 인용되고 총 인용금액이 소장청구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이다.

[별지7]

지연손해금(피고 회사)

1. 원고 EO, EP, EQ, ER, ES, ET, CN³³⁾

: 별지4 J.항 기재 총 인용금액 중 별지2-1의 '④소장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서는 2014. 6. 10.부터,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서는 2016. 2. 16.부터 각 2016. 6. 6.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나머지 원고들(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원고들은 불포함)

: 별지4 J.항 기재 총 인용금액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6. 6. 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끝.

33) 총 인용금액이 소장청구금액을 넘는 경우이다.

각주1: 이하 주문에서는 'A 주식회사'라고만 한다.

각주2: 피고들 모두 제1심 원고 중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하여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별지 1-1 및 1-2 기재와 같다)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각주3: 해당 선박을 제조하는데 이미 투입된 비용(발생원가)과 앞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를 합하여 산
정하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각주4: 진행률에 의한 매출액 계산: 건설형 공사는 일반적으로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수익

과 공사원가를 공사가 수행되는 회계기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 처리 방법으로 도급 금액에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동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각주5: 2009. 1.경부터 2009. 11.경까지 피고 회사의 전략·기획·재무총괄 담당 사장으로 재직하고, 2009. 11.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회계 등 재무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각주6: 갑 제42호증과 같다.

각주7: 공사손실충당금이 발생한 경우 매출원가에 포함되므로 공사손실충당금을 임의로 낮추게 되면 결국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각주8: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박제조업의 경우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발생원가/총공사 예정원가)에 비례하여매출액이 인식되므로 총공사 예정원가를 감액하면 진행률이 상승하여 결국 매출액이 과대계상된다.

각주9: 매출원가와 매출액을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하여 결과적으로 매출총이익을 과대계상하였으므로 영업이익, 당기손이익의 과대계상 규모는 매출총이익의 과대계상 규모와 같다.